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36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3. 2. 27.

제 출 자 : 달성군



1. 제안이유

청년혁신위원회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청년 세대의 요구를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청년정책위원회 명칭 변경(안 제7조)
- 나. 위원회 구성 변경(안 제8조)
- 다. 위원회 정기회 운영 횟수 변경(안 제11조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청년기본법」 제4조, 제14조 (※ 붙임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기타
 - 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 - (2) 입법예고(2023. 1. 3. ~ 1. 24.) 결과 : 의견 없음
 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 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 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 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”을 “(청년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청년정책위원회”를 “청년 혁신위원회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당연직 위원: 청년의 일자리 · 고용업무 부서장, 청년의 복지업무 부서장, 청년의 교육업무 부서장, 청년의 건강업무 부서장

제8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위촉 · 임명직 위원: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청년을 5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”를 “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연 1회”를 “연 2회”로 한다.

제11조제6항 중 “간사는 청년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.”를 “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<u>청년정책위원회의</u> 설치 및 운영)	제7조(<u>청년혁신위원회의</u> 설치 및 운영)
① 청년정책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<u>청년정책위원회</u> 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① ----- ----- <u>청년혁신위원회</u> -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8조(위원회의 구성)	제8조(위원회의 구성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, 부위원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	② <u>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한다.</u>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1. 당연직 위원 : <u>청년·일자리·복지· 주거·고용·문화예술·교육·건강 등 관련업무 부서장으로 한다.</u>	1. 당연직 위원 : <u>청년의 일자리 · 고용업무 부서장, 청년의 복지업 무 부서장, 청년의 교육업무 부서 장, 청년의 건강업무 부서장</u>

현행	개정안
2. 위촉직 위원 :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을 5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 ④ (생략) 제9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<u>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u> ② (생략) 제11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를 <u>연 1회</u> 개최하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.	2. 위촉·임명직 위원 :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청년을 5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 ④ (현행과 같음) 제9조(위원의 임기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u> ② (현행과 같음) 제11조(위원회의 운영) ① ----- ----- <u>연 2회</u>-----, ----- -----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
②~⑤ (생략) ⑥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, <u>간사는 청년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.</u> ⑦~⑧ (생략)	②~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-----, <u>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.</u> ⑦~⑧ (현행과 같음)

□ 「청년기본법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〈이하생략〉

제14조(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) ① 시·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.

②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